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95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전진숙
박용갑 · 박지원 · 송옥주
김성범 · 이개호 · 조인철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 해양 분쟁의 복잡화, 불법조업·해양범죄·밀수·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 해양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양영역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정보융합센터(IFC, Information Fusion Center)를 설립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연계·융합·분석·관리하여 해양 위협을 사전에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해양경비정보(MDA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활용·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인 해양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특히,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마약 등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와 예방적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주권 보호와 국민의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연계·가공·융합·분석 및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해역과 선박에 대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해양경비정보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사항을 해양경비기본계획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연계·가공·융합·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3제1항).

다.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운영,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제2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융합·분석 및 활용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운영
4.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5.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국가해양경비정보 융합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④ (생략) <u><신설></u>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다만,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해양경비 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 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은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융합
· 분석 및 활용

3.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
성체계 구축·운영

4.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내·외 협
력체계 구축·운영

5.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국가해양경비정보
융합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